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3년 6월 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1.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5.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2023년 6월 소비는 전월대비 1.0%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2%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4.7%)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2%)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운송장비(1.6%)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2.5%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1.7%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	2021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6월	5월p	6월p
생산	전산업	-1.2	5.3	4.6	1.8	1.0	0.6	2.6	1.6	0.8	0.4	-1.5	0.5	1.1(-1.1)	0.1(1.1)
	광공업	-0.3	8.2	1.4	3.3	-1.3	1.7	2.9	3.2	-2.3	-2.4	-6.4	1.6	3.0(-7.6)	-1.0(-5.6)
	제조업	-0.2	8.4	1.4	3.4	-1.5	1.6	3.1	3.2	-2.2	-2.6	-6.7	1.6	3.0(-7.9)	-1.1(-5.8)
	건설업	-2.1	-6.7	2.7	-2.9	-3.3	-0.6	2.4	0.5	-0.1	0.8	4.6	-1.8	1.1(6.1)	-2.5(8.9)
	서비스업	-2.0	5.0	6.7	1.2	2.2	0.3	2.6	0.8	2.9	1.7	0.1	0.1	-0.3(1.9)	0.5(3.5)
소비	소비재 판매	-0.1	5.8	-0.3	2.9	1.5	1.1	0.5	-0.7	-1.0	0.3	-0.9	-0.6	0.4(-0.6)	1.0(1.4)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3	1.4	-1.7	-0.4	0.4	-0.4	8.6	-0.2	2.7	3.5(-4.5)	0.2(-0.6)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5	0.0(2.7)	0.1(2.3)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7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3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변동 없음)

○ 2023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100)으로 전월대비 0.1% 상승함(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0.8%), 음식·숙박(0.5%), 교통(0.4%), 기타 상품·서비스(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오락·문화(0.1%), 의류·신발(0.1%), 보건(0.1%)은 상승, 주류·담배, 교육, 통신은 변동 없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1.3%)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7%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5% 하락하여 전월대비 변동 없음.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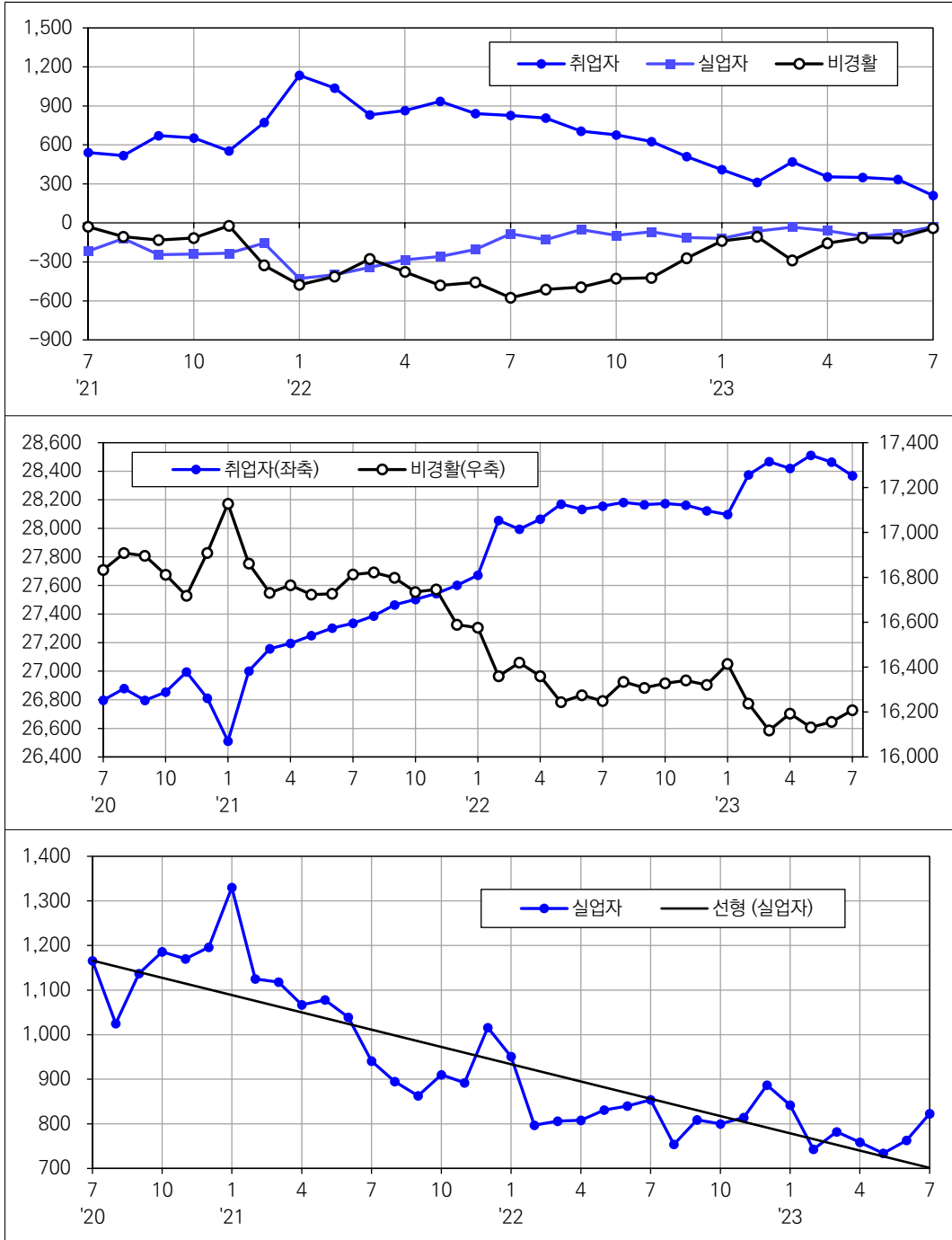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3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1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9만 6천 명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7월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건설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됨. 서비스업 취업자는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전문과학기술 및 예술 여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교육서비스는 감소로 전환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7월은 30대, 50대 및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20대 및 40대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비경제활동인구는 20~4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실업자는 50대에서 증가로 전환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7월은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됐고 임시직 및 일용직 감소폭은 확대됨. 고용주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자영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감소로 전환됨. 임시직은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교육서비스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주는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자영자는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기간제) 전년동월대비 7월 기간제 근로자는 7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6월 +11만 2천 명)됨.
- (일시휴직자) 전년동월대비 7월 일시휴직자는 1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로 전환(6월 -1만 9천 명)됨.
- (근로시간) 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감소함.
-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7월 실업자는 3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6월 -8만 1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6만 명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6월 -11만 8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5만 2천 명 증가함.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7월은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됨.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50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거나 감소폭이 축소됨. 실업자는 5대에서 증가로 전환됐고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교육에서, 30대는 정보통신에서, 40대는 전문과학기술에서 감소로 전환됨. 60세 이상은 농림어업에서 감소로 전환됐고 사업관리지원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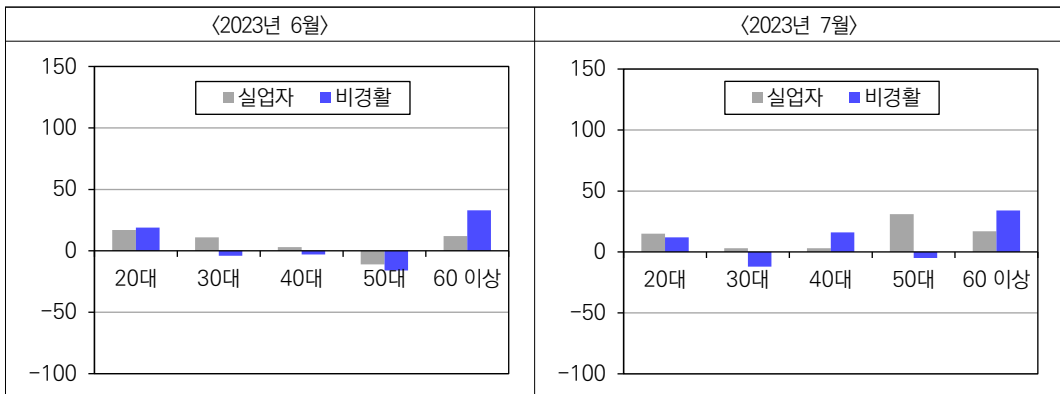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취업자	-36	-14	-10	(1)	-63	-103	-128	(-42)	70	70	51	(10)
실업자	-6	3	-11	(-5)	-67	-37	-33	(15)	-32	-17	-20	(3)
비경황	59	34	43	(3)	-66	-55	-31	(12)	-119	-128	-100	(-12)
실업률	-1.9	2.1	-4.5	(-2.8)	-1.4	-0.7	-0.5	(0.4)	-0.6	-0.4	-0.3	(0.1)
고용률	-1.7	-0.7	-0.5	(0.1)	0.9	0.3	-0.1	(-0.6)	2.0	1.9	1.6	(0.1)
	40대				50대				60세 이상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취업자	-48	-34	-61	(-33)	49	71	61	(-18)	379	343	298	(-11)
실업자	-7	-16	-8	(3)	9	-23	18	(31)	2	9	25	(17)
비경황	-60	-70	-54	(16)	-62	-57	-80	(-5)	132	157	183	(34)
실업률	-0.1	-0.2	-0.1	(0.1)	0.1	-0.3	0.3	(0.5)	-0.1	0.0	0.3	(0.3)
고용률	0.5	0.8	0.5	(-0.3)	0.6	0.9	0.8	(-0.2)	1.0	0.8	0.4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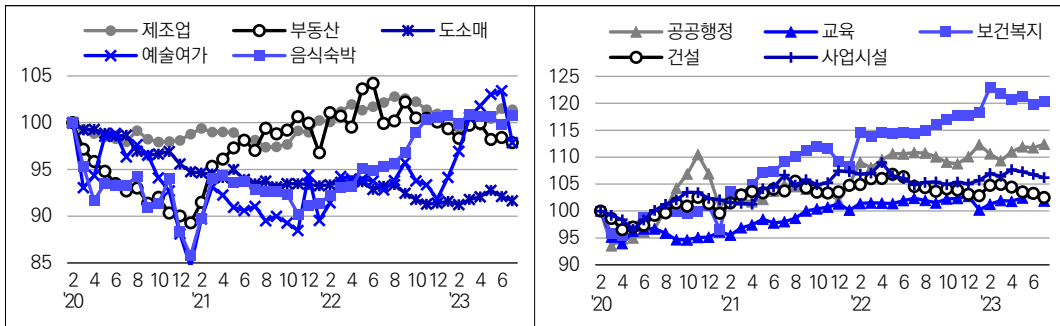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도소매, 부동산, 예술여가, 교육, 건설, 사업시설이 감소함. 반면 제조업은 정체됨. 음식숙박, 공공행정, 보건복지는 증가함.
- 도소매, 부동산, 예술여가는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기록함.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5	-14	-42	-8	-7	-21	-35	-2.3
광업	-2	0	0	2	1	-1	2	23.4
제조업	-39	-10	-35	32	47	-5	74	1.7
전기·가스·증기	5	8	4	0	2	2	3	3.9
수도·원료재생	-4	-5	1	1	-12	6	-5	-3.2
건설업	-66	-62	-43	-18	-5	-16	-39	-1.9
도매 및 소매업	-31	-27	-55	25	-24	-16	-15	-0.5
운수 및 창고업	-25	-39	-26	20	-2	1	20	1.2
숙박 및 음식점업	128	116	125	-1	-18	21	2	0.1
정보통신업	61	53	48	35	-2	-4	29	2.9
금융 및 보험업	11	18	-7	3	-3	1	1	0.2
부동산업	-30	-32	-11	-9	1	-3	-11	-2.1
전문·과학·기술	111	98	62	30	-15	-7	9	0.6
사업시설관리지원	10	10	17	-5	-7	-8	-20	-1.4
공공행정·사회보장	15	14	18	10	-2	7	16	1.3
교육서비스업	20	29	-8	11	18	-29	1	0.1
보건 및 사회복지	166	126	145	13	-37	15	-9	-0.3
예술·스포츠·여가	47	50	26	6	2	-29	-20	-3.9
협회·단체·수리·기타	-15	1	4	-18	3	4	-12	-1.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4	-4	-13	1	-4	-4	-6	-7.9
국제 및 외국기관	1	3	-1	-1	1	0	0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23년 7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됐고 임시직 및 일용직 감소폭은 확대됨. 고용주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감소로 전환됐고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반면 건설업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사업관리지원에서는 증가로 전환됨. 임시직은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됐지만 교육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도소매는 고용주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자영업자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591	546	513	168	-29	36	175	1.1
임시직	-158	-133	-144	-6	-29	-3	-38	-0.8
일용직	-133	-115	-188	-45	-5	-92	-142	-13.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53	15	48	9	-8	1	2	0.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41	81	44	15	39	-13	41	0.9
무급가족종사자	-44	-60	-62	4	-13	-17	-27	-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농림어업	-12	0	1	-22	-24	-22	-9	-6	-13	-20	-13	-10	54	43	28
제조업	5	38	-32	-21	-19	1	-32	-25	-27	14	5	17	-1	-1	4
건설업	20	11	38	-20	-24	-28	-56	-68	-91	-3	2	10	-5	21	29
도소매	54	52	51	-24	-17	-49	5	-8	-10	-25	-31	-9	-23	-9	-25
운수창고	2	-5	7	-30	-33	-20	-10	-11	-13	5	5	7	8	5	-5
음식숙박	77	81	76	30	35	48	-6	-12	-9	44	19	18	-15	2	2
정보통신	45	40	25	1	5	16	3	-3	-3	9	7	7	3	4	5
금융보험	10	10	-6	-14	-3	-8	2	-1	-2	2	1	0	8	8	8
부동산	-15	-6	4	-8	-15	-11	0	1	0	3	1	2	-11	-12	-7
전문과학기술	85	74	49	14	9	4	2	4	-2	14	15	18	-5	-5	-8
사업관리지원	-10	-19	9	3	5	-12	3	19	16	8	4	1	10	7	10
공공행정	32	15	19	-14	-2	2	-2	1	-4	-	-	-	-	-	-
교육서비스	43	38	27	-21	-11	-39	0	4	4	-5	-6	-5	12	8	12
보건복지	219	163	179	-42	-37	-20	-6	-3	-5	-7	-2	-11	2	4	2
예술스포츠허위단체	14	20	21	28	23	17	2	1	-3	8	8	2	-7	-2	-7
협회단체	17	17	26	-14	-12	-1	-29	-8	-17	3	1	2	8	3	-7
가구 내 고용	-1	-1	-1	0	-6	-8	1	-1	-6	-	-	-	4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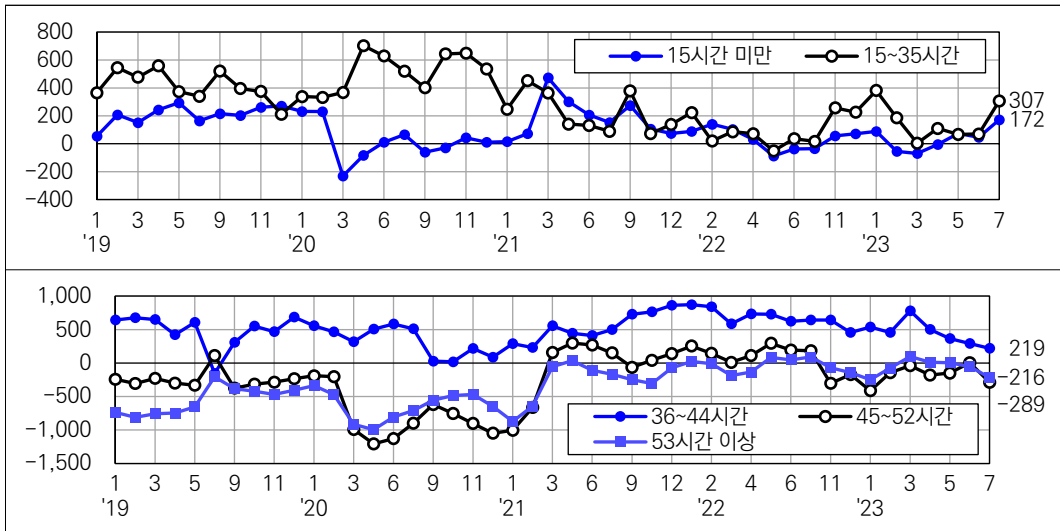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감소함.

－ 조사대상기간 중 폭우로 농림어업, 건설업 및 숙박음식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임.

[그림 4]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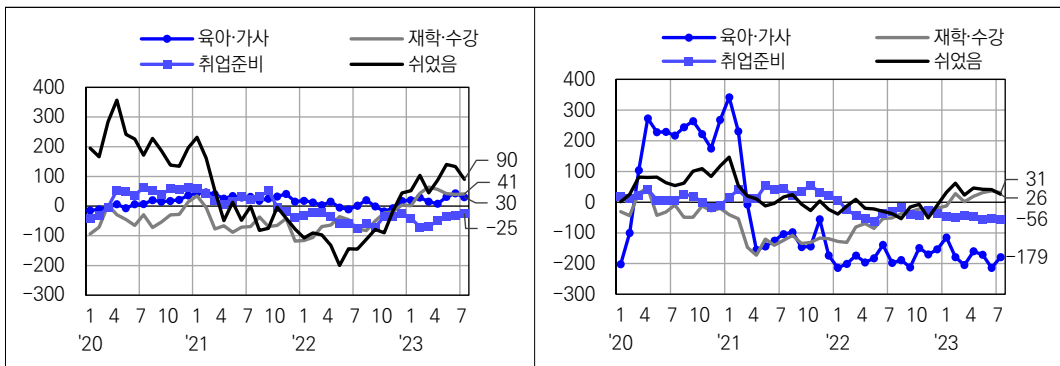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만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6월 -11만 8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14만 6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연로에서 증가로 전환됨. 여성은 -18만 6천 명으로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5]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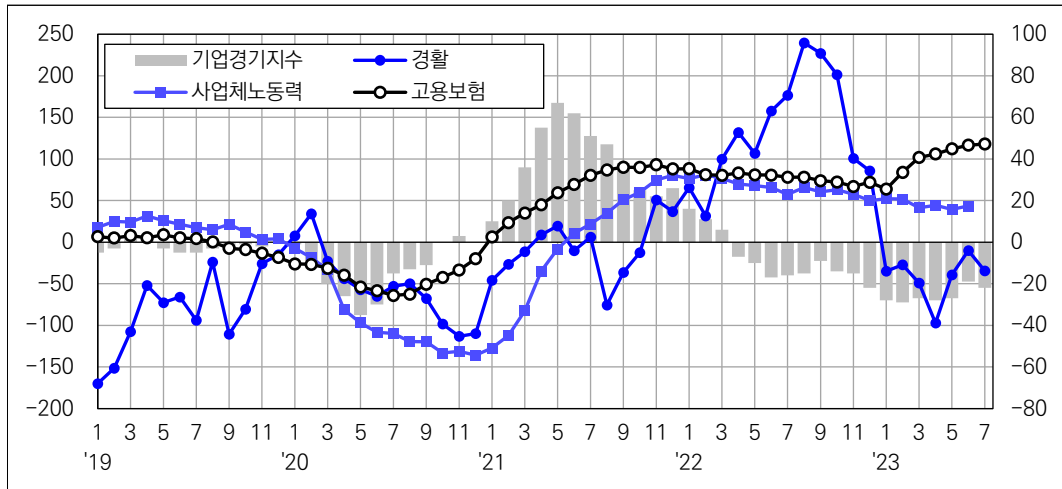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 2023년 7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3만 5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반영된 영향임.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확대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5천 명 감소함.

[그림 6]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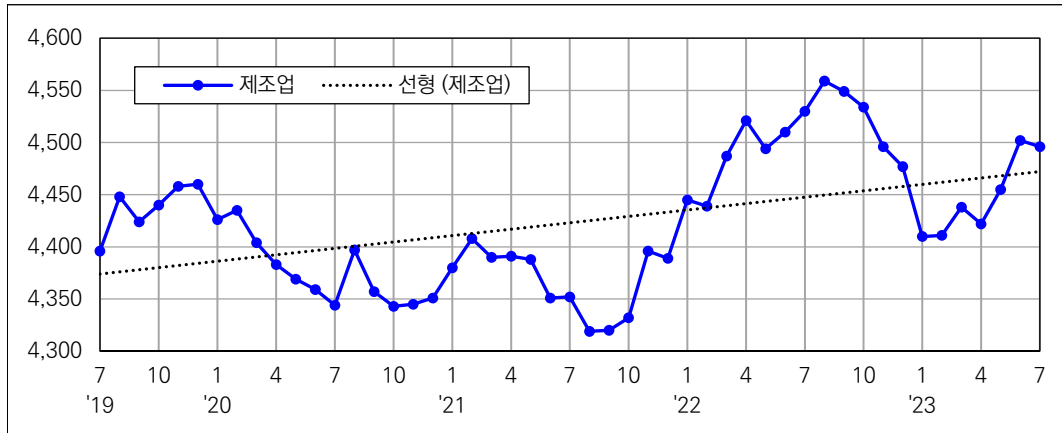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7]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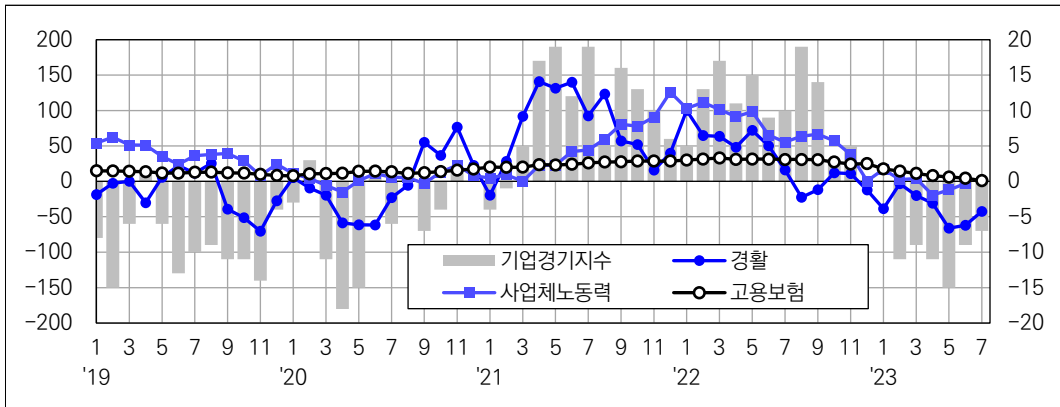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7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축소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8]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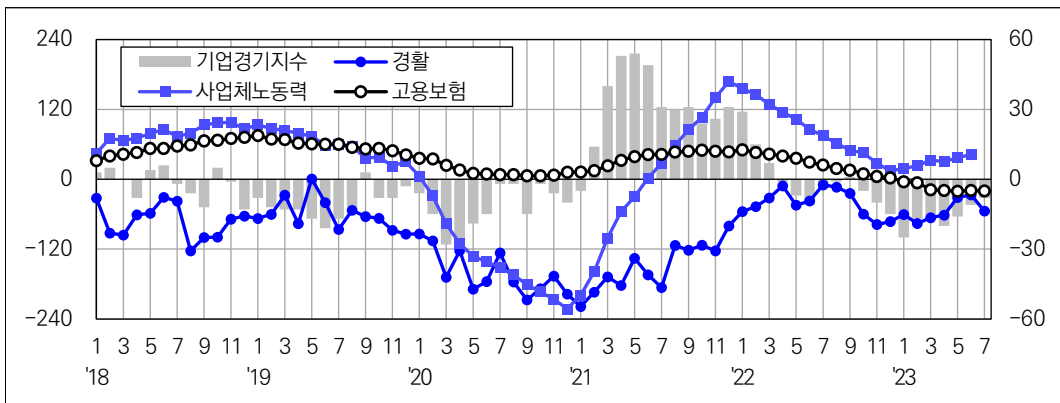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7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32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도소매) 경찰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축소됨.
 - (전문과학기술) 경찰 취업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이 축소됨.
 - (교육서비스) 경찰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됨.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로 전환됨.
 - (예술여가)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을 유지함.

[그림 9]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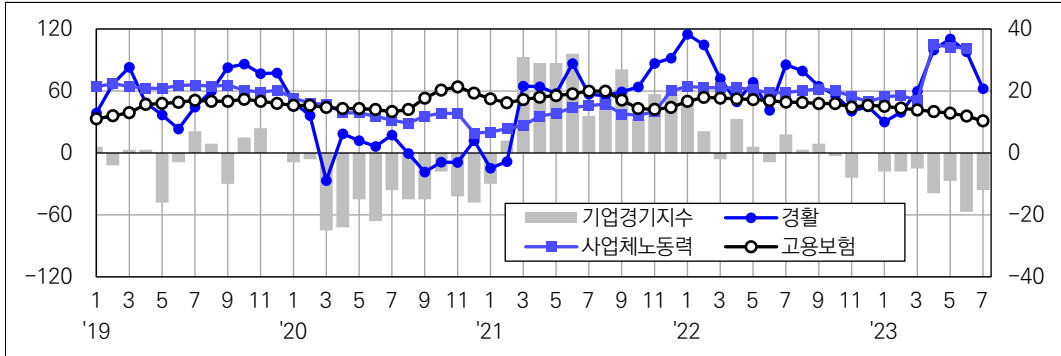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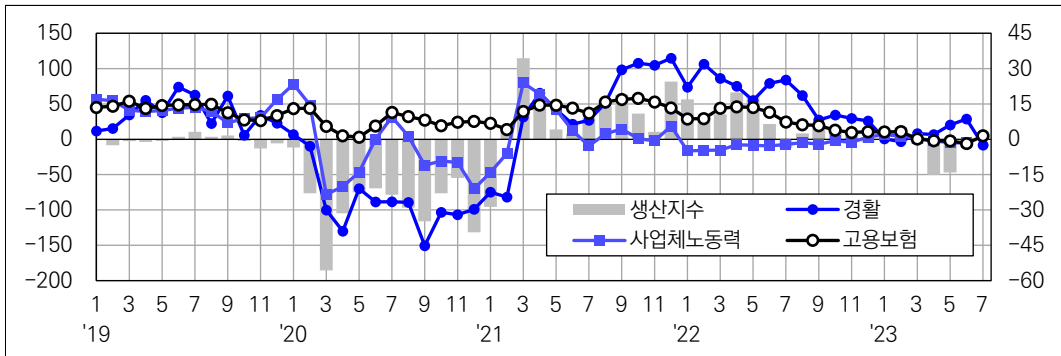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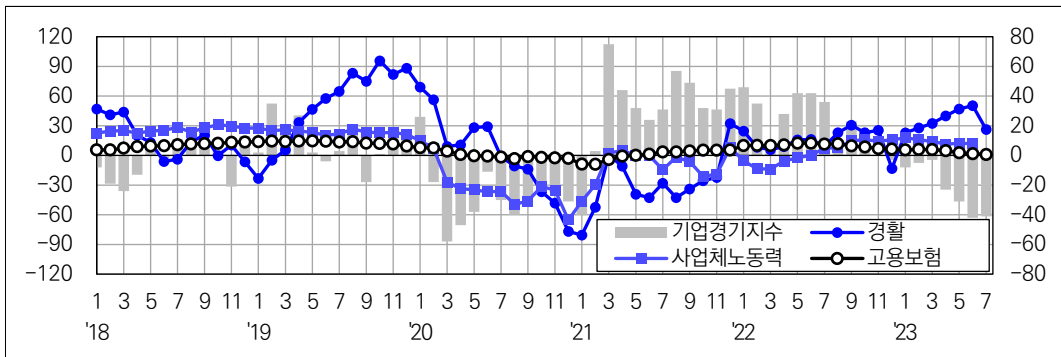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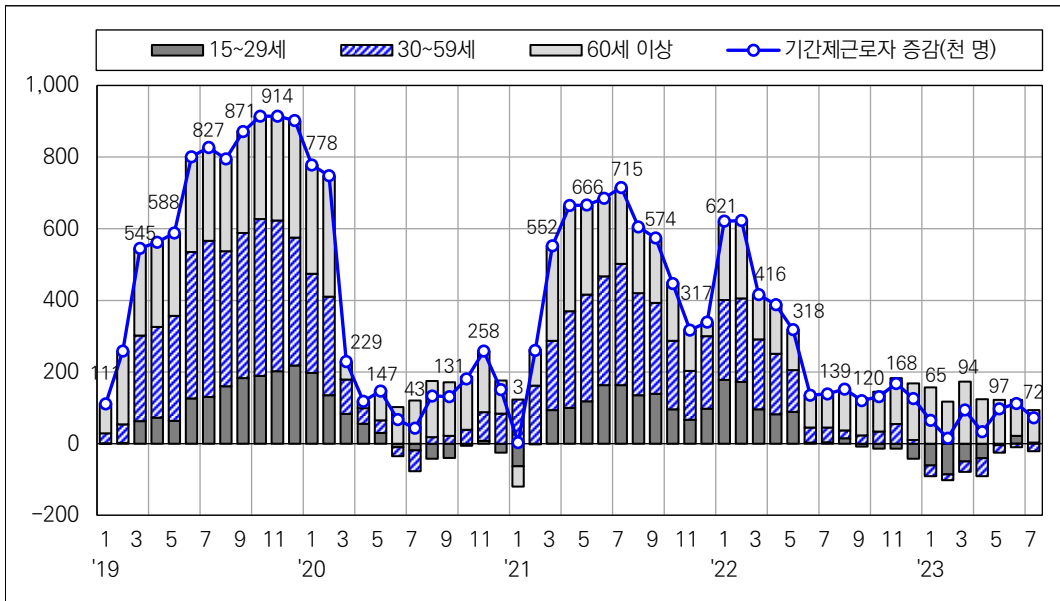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7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15~29세에서 증가폭이 축소됐고 30~59세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3]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3년 5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2023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0만 3천 원(3.1%)임.
 - 2023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1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76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둔화함.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전년동월 특별급여 증가폭의 확대에 의한 기저 영향이 큼.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5월	5월	1~5월	5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3,883 (5.9)	3,592 (5.1)	3,979 (2.5)	3,703 (3.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4,105 (6.3)	3,787 (5.3)	4,224 (2.9)	3,919 (3.5)
	정액급여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282 (4.1)	3,284 (4.4)	3,418 (4.1)	3,408 (3.8)
	초과급여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14 (5.1)	222 (2.6)	219 (1.9)	240 (8.0)
	특별급여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608 (20.4)	281 (21.3)	587 (-3.5)	271 (-3.9)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31 (3.0)	1,743 (2.7)	1,733 (0.1)	1,767 (1.4)	
소비자물가지수	105.1 (0.4)	105.7 (0.5)	104.0 (2.5)	109.3 (5.1)	106.1 (4.3)	107.6 (5.4)	110.6 (4.2)	111.1 (3.3)	
실질임금증가율	3.0	0.5	2.0	-0.2	1.5	-0.3	-1.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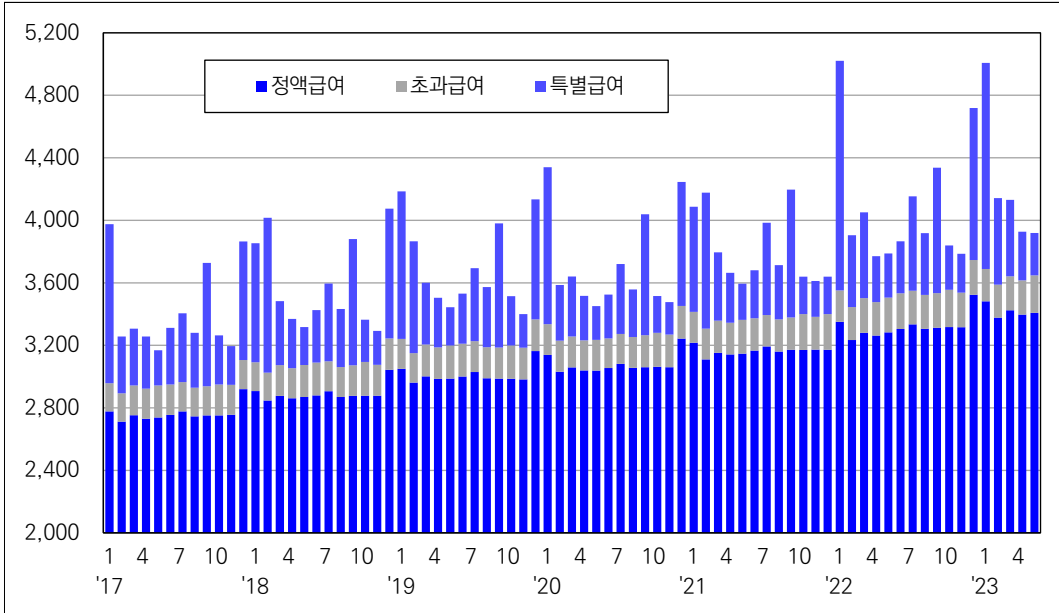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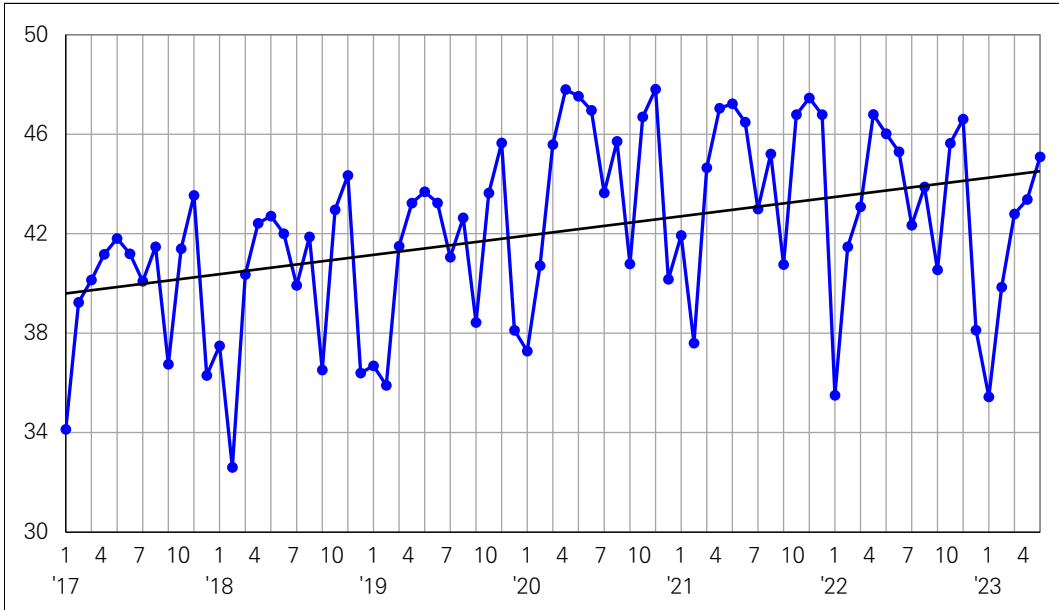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5월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임금 크게 증가

○ 2023년 5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39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22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함.²⁾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폭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 영향이 큼.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폭이 둔화된 산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며, 특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은 전년동월대비 정액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특별급여가 감소함.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4%, 0.6% 증가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5월	5월	1~5월	5월
중소 규모	소 계	3,316 (3.8)	3,462 (4.4)	3,427 (4.5)	3,292 (4.1)	3,505 (2.3)	3,392 (3.1)
	상용임금총액	3,510 (3.9)	3,675 (4.7)	3,631 (4.8)	3,482 (4.4)	3,732 (2.8)	3,603 (3.5)
	정액급여	3,012 (3.4)	3,139 (4.2)	3,105 (4.0)	3,113 (4.2)	3,227 (3.9)	3,228 (3.7)
	초과급여	176 (2.9)	186 (5.7)	182 (5.1)	188 (2.3)	180 (-0.7)	200 (6.0)
	특별급여	322 (10.4)	350 (8.7)	344 (12.1)	180 (8.9)	324 (-5.8)	174 (-3.0)
	임시일용임금총액	1,671 (3.4)	1,711 (2.4)	1,697 (2.5)	1,722 (2.5)	1,698 (0.0)	1,746 (1.4)
대규모	소 계	5,582 (6.5)	5,922 (6.1)	6,188 (10.0)	5,111 (8.1)	6,302 (1.8)	5,228 (2.3)
	상용임금총액	5,687 (6.6)	6,049 (6.4)	6,320 (10.4)	5,213 (8.4)	6,447 (2.0)	5,341 (2.5)
	정액급여	3,973 (3.3)	4,155 (4.6)	4,111 (4.3)	4,078 (4.7)	4,280 (4.1)	4,218 (3.4)
	초과급여	357 (5.1)	377 (5.5)	366 (4.9)	379 (3.3)	391 (6.6)	420 (10.8)
	특별급여	1,357 (18.1)	1,516 (11.8)	1,842 (28.5)	756 (38.5)	1,777 (-3.5)	704 (-7.0)
	임시일용임금총액	2,214 (9.1)	2,321 (4.8)	2,292 (6.0)	2,096 (3.1)	2,282 (-0.4)	2,10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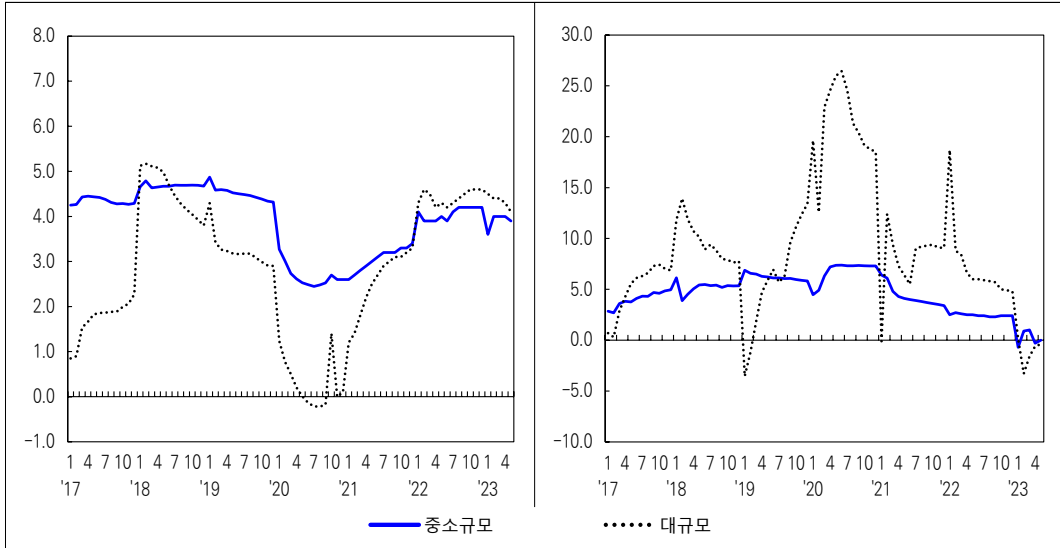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3년 5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0%)이고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6.5%), 건설업(5.7%) 순으로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의 임금상승률도 평균상승률을 상회하는 4.5%로 나타남.
- 2023년 5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37만 5천 원)이고,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92만 4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98만 5천 원)인 반면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5만 4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5월	5월	1~5월	5월
전 산업	3,689 (4.6)	3,869 (4.9)	3,883 (5.9)	3,592 (5.1)	3,979 (2.5)	3,703 (3.1)
광업	4,415 (2.1)	4,608 (4.4)	4,531 (4.8)	4,537 (3.9)	4,571 (0.9)	4,556 (0.4)
제조업	4,239 (6.2)	4,484 (5.8)	4,570 (8.5)	4,044 (7.4)	4,713 (3.1)	4,226 (4.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53 (0.3)	6,907 (2.3)	6,289 (2.2)	5,436 (1.9)	7,122 (13.2)	5,924 (9.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094 (5.3)	4,168 (1.8)	4,018 (1.7)	3,936 (2.8)	4,146 (3.2)	4,193 (6.5)
건설업	3,106 (2.4)	3,229 (4.0)	3,196 (4.1)	3,125 (3.8)	3,333 (4.3)	3,303 (5.7)
도매 및 소매업	3,551 (3.7)	3,773 (6.3)	3,719 (5.5)	3,530 (5.2)	3,900 (4.9)	3,684 (4.4)
운수 및 창고업	3,795 (7.5)	4,040 (6.5)	3,837 (6.3)	3,630 (7.6)	4,084 (6.4)	3,803 (4.8)
숙박 및 음식점업	1,905 (1.4)	2,004 (5.2)	1,970 (4.6)	1,990 (6.7)	2,076 (5.4)	2,054 (3.2)
정보통신업	4,796 (4.0)	4,999 (4.2)	5,145 (4.0)	4,699 (4.8)	5,215 (1.4)	4,805 (2.2)
금융 및 보험업	6,963 (6.7)	7,324 (5.2)	7,898 (7.5)	6,410 (5.1)	7,710(-2.4)	6,375(-0.5)
부동산업	2,954 (3.7)	3,086 (4.5)	3,123 (5.9)	2,934 (0.8)	3,121(-0.1)	3,022 (3.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 (4.8)	5,376 (5.3)	5,275 (7.1)	4,882 (4.9)	5,372 (1.8)	4,985 (2.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92 (3.4)	2,584 (3.7)	2,564 (3.9)	2,517 (3.0)	2,652 (3.4)	2,621 (4.1)
교육서비스업	3,355(-0.3)	3,435 (2.4)	3,483 (1.8)	3,212 (1.7)	3,562 (2.3)	3,287 (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4 (2.5)	3,122 (3.6)	3,098 (3.9)	3,045 (3.2)	3,102 (0.1)	3,063 (0.6)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94 (4.2)	3,077 (2.8)	3,036 (2.8)	2,873 (1.4)	3,060 (0.8)	2,894 (0.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00 (5.4)	2,832 (4.9)	2,803 (5.0)	2,703 (4.9)	2,982 (6.4)	2,827 (4.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7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1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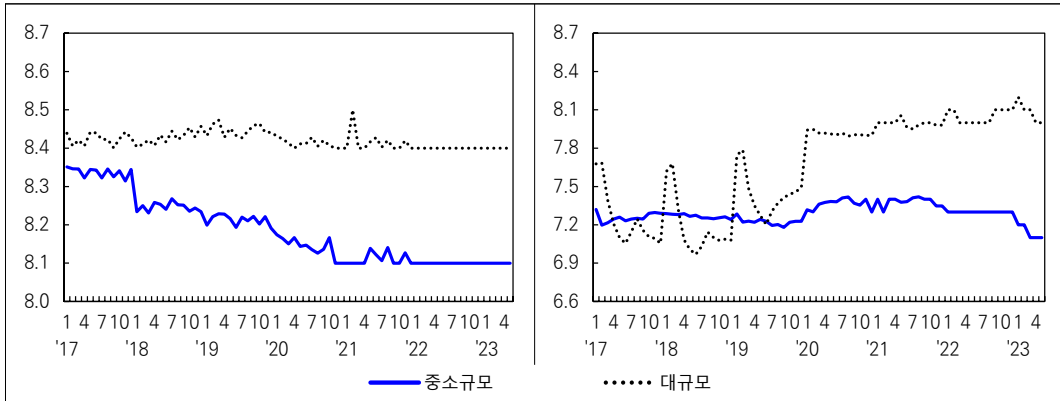
○ 2023년 5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5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2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3년 5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53.8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7.8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는 15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시간 감소함.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5월	5월	1~5월	5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3(0.1)	158.3(-1.2)	156.3(-0.7)	161.6(6.6)	155.6(-0.4)	153.8(-4.8)
	상용 총근로시간	167.8(0.1)	165.9(-1.1)	163.4(-0.6)	169.4(7.1)	164.0(0.4)	162.3(-4.2)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0.1(0.2)	158.2(-1.2)	155.8(-0.6)	161.5(7.7)	156.9(0.7)	154.3(-4.5)
	상용 초과근로시간	7.7(-1.3)	7.7(0.0)	7.7(0.0)	7.9(-3.7)	7.1(-7.8)	8.0(1.3)
	임시일용 근로시간	97.4(1.4)	96.4(-1.0)	95.8(-0.1)	97.0(0.7)	88.3(-7.8)	87.8(-9.5)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3(-0.3)	160.4(-1.2)	157.9(-1.7)	163.3(6.6)	160.5(1.6)	158.9(-2.7)
	상용 총근로시간	163.4(-0.3)	161.7(-1.0)	159.1(-1.5)	164.6(6.7)	162.1(1.9)	160.5(-2.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2.3(-0.5)	150.6(-1.1)	148.1(-1.7)	153.3(7.4)	151.1(2.0)	148.5(-3.1)
	상용 초과근로시간	11.1(1.8)	11.0(-0.9)	11.0(0.0)	11.3(-1.7)	10.9(-0.9)	11.9(5.3)
	임시일용 근로시간	127.9(2.2)	125.0(-2.3)	123.3(-3.1)	125.1(3.6)	117.2(-4.9)	114.9(-8.2)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5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3년 5월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광업(-8.7%), 숙박 및 음식점업(-7.6%), 건설업(-6.7%)임.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5월	5월	1~5월	5월
전 산업	160.7 (0.1)	158.7(-1.2)	156.6(-0.8)	161.8(6.5)	156.4(-0.1)	154.7(-4.4)
광업	179.9(-0.7)	174.8(-2.8)	172.9(-3.6)	178.9(1.4)	168.3(-2.7)	163.3(-8.7)
제조업	173.5(0.5)	171.1(-1.4)	169.1(-1.3)	175.0(6.2)	171.0(1.1)	170.4(-2.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1.6(-1.3)	158.6(-1.9)	155.9(-3.0)	152.4(-2.2)	159.4(2.2)	154.0(1.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9(0.2)	174.4(-1.4)	173.3(-0.3)	179.7(7.5)	169.5(-2.2)	167.8(-6.6)
건설업	135.9(-0.7)	134.3(-1.2)	132.8(-0.6)	136.5(5.6)	129.2(-2.7)	127.4(-6.7)
도매 및 소매업	163.8(0.0)	162.3(-0.9)	160.2(-0.5)	165.2(6.4)	159.5(-0.4)	156.6(-5.2)
운수 및 창고업	160.2(0.8)	160.6(0.2)	157.8(0.5)	163.6(7.1)	159.9(1.3)	159.2(-2.7)
숙박 및 음식점업	148.4(-0.9)	146.5(-1.3)	143.9(-0.5)	149.4(3.8)	138.4(-3.8)	138.1(-7.6)
정보통신업	164.1(0.2)	162.7(-0.9)	160.3(-0.3)	166.0(9.4)	161.8(0.9)	158.9(-4.3)
금융 및 보험업	161.9(-0.1)	159.8(-1.3)	157.1(-1.6)	163.3(9.3)	160.2(2.0)	156.4(-4.2)
부동산업	171.8(-0.8)	169.4(-1.4)	166.8(-1.4)	172.5(5.2)	167.3(0.3)	166.2(-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6(-0.1)	160.3(-0.8)	157.9(-0.7)	163.4(9.0)	159.0(0.7)	156.1(-4.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2.1(0.2)	159.8(-1.4)	157.9(-0.9)	163.2(5.9)	157.9(0.0)	156.4(-4.2)
교육서비스업	137.2(0.4)	136.1(-0.8)	133.4(-0.4)	138.1(8.6)	136.1(2.0)	134.9(-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3(-0.2)	155.3(-1.9)	153.2(-1.1)	159.0(6.8)	150.5(-1.8)	149.1(-6.2)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7(2.0)	150.8(-1.2)	148.7(0.4)	154.4(4.6)	148.9(0.1)	148.1(-4.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4(1.3)	160.3(-1.3)	158.5(-0.4)	163.5(6.8)	160.3(1.1)	158.2(-3.2)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5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제조업(170.4시간)이고,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7.8시간), 부동산업(166.2시간) 순임.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7.4시간)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1건
 - － 7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6건)보다 5건 적은 수치임.
- 2023년 7월 조정성립률은 12.9%
 - － 7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4.0%보다 8.9%p 높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7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7	21	33	4	2	2	27	1	26	2	0	9	12.9%
2022. 7	26	26	1	0	1	24	1	23	1	0	7	4.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3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7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와 같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1년, 2023년 7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7	1	0	0	0	0	3
2022. 7	1	2	2	0	0	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95건
 - 7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96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0.7%(3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9.3%(149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7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7	195	188	35	4	91	8	23	27	552
2022. 7	196	186	37	15	88	3	24	19	52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8건
 - 7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9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0%(4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0.0%(4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3년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2	8	8	4	0	3	0	1	0	9
2022. 2	9	4	2	0	2	0	0	0	1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 206만 740원

-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전자관보를 통해 결정·고시하였음.
-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 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 노동부는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음.
-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음.
- 정부는 2024년 최저임금의 현장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임.

◆ 삼성중공업노조 출범

- 7월 13일 삼성중공업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1974년 삼성중공업이 설립된 지 50년 만에 마침내 삼성중공업에도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다”며 “이제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꽃피우겠다”고 밝혔음.
- 삼성중공업노조는 6월 27일 설립 총회를 열고 7월 4일 노조설립 신고증을 거제시청에서 발부받았음.
- 2021년 6월 사무직군이 주축을 이룬 삼성중공업사무직노조가 설립됐지만, 현장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동안 현장직은 노조가 아닌 노동자협의회 형태를 유지해 왔음.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측과 임금협상을 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가 아니어서 파업 등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음.
- 노조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게도 문을 열기로 했음. 기업노조로 출발했지만 조만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해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임.

◆ 세라젬 노조 출범

- 8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세라젬을 업계 1위로 만든 노동자들이 여러 직군을 망라해 세라젬지부를 만들었다”고 밝혔음.
- 현재 조합원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CEM(방문판매 상급관리), HC리더(방문판매 중간관리), HC(방문판매점검), HP(영업전담), SMT(설치·수리), 행정매니저(사무·경영) 등 다양

- 한 직군에 속해 있음.
- 고용형태는 특수고용직인 HC를 제외하면 정규직이거나 계약직임. 이들의 고용주는 세라젼의 유통 및 서비스부문 자회사인 세라젼C&S로, 모기업이 지분 100%를 갖고 있음. 전국의 서비스부문 세라젼 노동자는 1,450명이 넘음.
- 이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개편과 직무전환, 임금(수수료)체계 변경으로 일상적인 고용 불안·저임금에 시달려왔으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조선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 7월 27일 조선대병원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조선대병원 노사는 교섭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음.
- 노사는 △임금 1.7%(총액 기준) 인상 △전 직원 감정노동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점진적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했음.
- 또한 노사는 △새병원 건립 추진과 △감염병 병원 건립 △병원 발전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음.

◆ **돌봄노동자 60% 근골격계 질환**

- 7월 1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돌봄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허리디스크, 손목·무릎관절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60.4%였음.
- 코로나19와 음, 독감 등 전염성 질환이 12.5%,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2.8%,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등 기타질환이 3.0%였음.
-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는 ‘업무 중 대상자 이동·자세 변경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응답자가 33.9%로 가장 많았음.
-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참고 넘어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24.9%에 달했음.
- 응답자의 29.1%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12.5%), 차별적 대우(9.7%), 공개적인 모욕과 명예훼손(8.3%), 집단따돌림(3.0%) 등의 순이었음.
-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7~30일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 526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관련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였음.

◆ 콜센터 상담사 10명 중 3명 방광염에 시달려

- 7월 26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콜센터 노동자 대부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음.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가 계약직이었고, 10명 중 7명 이상(74.4%)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월 소득은 220만 6천 원(세금 및 4대보험 공제 후)으로 최저임금(201만 580원)과 불과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음.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 근골격계질환이나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음.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목·어깨·팔·손가락 통증(69.7%)이나 만성피로(67.5%)를 경험했다고 답했음.
- 방광염이나 여성질환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각각 31.9%, 36.4%나 됐음. 우울·불안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을 호소한 경우도 31%나 됐음.
- 휴게시간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에 쉬는 시간을 물어보니 10명 중 1명(11.5%)은 '30분 미만'이라고 답했음.
- 업무 중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등 여유시간 이용과 관련해서도 '매우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6.4%에 그쳤음. '별로 가능하지 않다'거나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경우는 15.4%나 됐음.
-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광주 등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278명이 응답하였음.

◆ 교총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1,249건”

- 7월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2017~2022년 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이 1,249건이라고 밝힘.
- 2017년 116건이 발생한 후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113건), 2021년(239건)에 잠시 줄었고 지난해 361건으로 다시 늘었음.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이 가한 상해·폭행은 1,089건, 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은 44건 발생했음.
-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상해치료와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단의 자문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가해 학생에게는 1대1 통합지원 인력과 사회복지무요원이 배치되고 추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최근 6년간 교사 100명 극단선택

- 7월 30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 초중고 교원은 1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음.
- 초중고 전체 교사(약 44만 명) 중 초등교사가 44%로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중 초등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임.
- 숨진 교사는 2018년 14명에서 2021년 22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2년 19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1명이 사망했음.

〈표 5〉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원 극단선택 현황

(단위: 명)

	학교급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8	7	-	7	14
2019	8	2	6	16
2020	10	2	6	18
2021	16	4	2	22
2022	12	3	4	19
2023	4	4	3	11
합계	57	15	28	100

주: 시도취합자료, (기간) 2018. 1. 1.~2023. 6. 30.
 자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 당정, 임신·출산 지원 확대

- 7월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당정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 현재는 1명을 출산했을 때 100만 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수와 무관하게 1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음. 앞으로는 쌍둥이 임신부는 200만 원, 삼둥이 임신부는 300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됨.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함.
- 현재 임신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이를 조산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함.
- 난임 시술 지원도 강화됨. 현재 일부 지역에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수술비가 지원되는데, 당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득기준을 폐지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음. 또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난소 검사, 정액 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 직장인 33% “갑질 여전”

- 7월 9일 직장갑질119는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이었음.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 약자’일수록 괴롭힘을 더 자주, 더 심하게 당했음. 노동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 10명 중 2~3명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52시간 초과’인 경우 48.5%가 괴롭힘을 겪었음.
- 괴롭힘 심각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수입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응답자(60.0%)가 ‘월 500만 원 이상’인 응답자(32.4%)보다, ‘비정규직’(52.9%)이 ‘정규직’(44.6%)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56.5%)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41.9%)보다 심각성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음.

◆ 국내 기업 75% “정년 마친 직원 다시 고용한 적 있다”

- 7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명 이상을 고용한 전국 1,0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6월)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5%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음.
-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66.4%)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이어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 등이라고 답했음.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든 기업이 많았음.
- 계속 고용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도달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답했음(복수

- 응답). 정년을 연장한다는 답변은 26.3%, 정년을 폐지한다는 답변은 12.8%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방식 응답이 많았음.
- 응답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고령자 고용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47.1%),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자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음.
 - 현재 시행 중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7.1%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48.8%에 머물렀음.

◆ 노조 밖 노동자 28%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

- 7월 11일 민주노총은 2023년 전국 미조직 임금노동자(비조합원) 5,37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의 28.2%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음.
- 임금 체불 경험자 가운데 사업장별로는 10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이르렀음.
- 주간 노동시간별로 따져보니,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체불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30.6%,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의 체불 경험은 43.7%를 차지했음.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쓴다’고 답한 노동자는 63.6%로 집계됐음.
- 고용형태별로 나누면,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유급휴일로 쓴다’는 응답이 76.3%, 비정규직 노동자는 39.2%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다’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42.9%였음.
- ‘노사협의회가 있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음. ‘없다’(51.8%)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모른다’는 응답도 22.4%나 됐다.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24.2%가 ‘있다’고 답했음. ‘없다’(44.3%), ‘모른다’(23.2%)가 3분의 2를 넘었음.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대표의 부재 비율이 높았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없다’는 응답이 52.1%였고, 5~19인 사업장 55.5%, 20~29인 사업장 55.6%였음.
-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을 묻는 조사에선 ‘해당 없음’(45.8%)을 제외하곤 ‘모른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85.5% ‘방치’

- 7월 16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괴롭힘 행위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정 근기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28,731건이었음.
- 신고된 전체 사건 중 개선지도·검찰송치·과태료부과 등으로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4,168건(14.5%)에 그쳤음. 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0.7%에 불과했음.
-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봤더니 행정종결이 14,751건(51.3%)으로 특히 많았음.
-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15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장수농협 1건에 그쳤음.

◆ 건설노동자 5명 중 1명은 물도 못 마셔

- 8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건설노조)는 폭염기 건설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 응답자 4명 중 1명꼴인 604명(24.9%)은 휴게공간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5명 중 1명(20.3%·493명)은 작업장에서 시원한 물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음. 폭염기 작업 시 4명 중 3명(74%·2,372명)은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답했음. 이어 두통(37.9%·1,214명), 메스꺼움(35.2%·1,130명), 근육경련(32.1%·1,030명) 순으로 증상을 느꼈다고 했음.
- 응답자의 81.7%(1,981명)는 폭염이어도 별도의 작업 중단 없이 계속 일한다고 답했음. 지난해 조사치인 58.5%(664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설문조사는 7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206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였음.

◆ 한국 워라밸 수준, OECD 최하위권

- 7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제43권 제2호)에 실린 노혜진 강서대 교수(사회복지학)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을 보면, 한국은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짧은, 즉 일과 삶의 균형 시간 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됐음.
- 우선 31개 나라를 △노동·가족 시간 보장 모두 높음 △노동 시간 보장만 높음 △가족

- 시간 보장만 높음 △노동·가족 시간 보장 모두 낮음 등 네 그룹으로 나뉘었음.
- 한국은 미국, 그리스 등과 함께 노동·가족 시간의 보장 정도가 모두 낮아 노동 시간이 과도하고 가족 시간은 짧은 그룹에 속했음.
 - 특히 (적정) 노동 시간 보장 수준이 끝에서 세 번째로 매우 낮았는데, 조사 대상 국가 중 매우 긴 노동 시간(연 1,915시간) 등의 영향임. 가족 시간 영역에서도 한국은 1점 만점에 0.37점으로, 31개국 중 20번째로 하위권이었음.
 - 제도상 보장된 휴가 길이(0.93점) 등에서 점수가 높았지만 휴가 사용률(0.18점), 휴가에 따른 소득대체율(0.4점) 등의 점수가 낮은 탓임.
 -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적정 노동 시간과 소득 보장 등을 통해 짧은 노동 시간과 긴 가족 시간으로 위라벨 수준 최상위권 국가로 꼽혔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